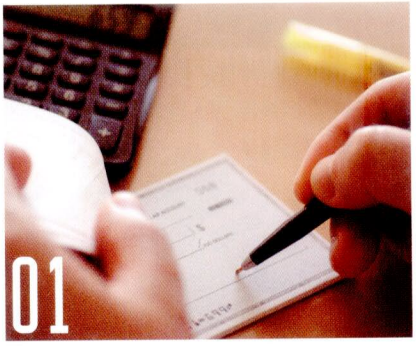
절세의 지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무조건 영수증을 모아서 세무 대리인에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되는 경우를 정확히 알아야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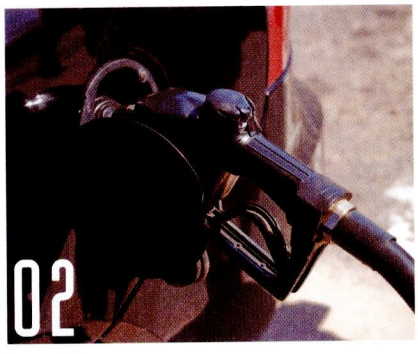
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서울상공회의소 세무상담역 **지하식**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물건을 파는 상대방 사업자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가 필요조건이다. 일반과세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충분조건이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이면 1차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앞의 증빙이 아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견적서, 입금증, 계약서만 받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 구매, 유지 비용

사업자 사이에서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공제되고, 휘발유 차량은 안 된다는 오해가 퍼져 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가 기준인데 이것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체계를 보면 개별소비세를 내는 차량과 관련된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1,000cc 이하 차량과 8인승 초과 차량, 트럭이나 화물, 밴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원천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를 구입했다면 매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차량의 유지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라면 무조건 공제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중교통요금도 공제될까?

업무 출장차 KTX를 이용했는데 영수증을 보니 부가세가 붙어 있다. 그렇다면 이 승차요금도 공제 대상이 될까? 철도청은 일반과세자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언뜻 봐선 대전제를 충족했으니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버스, 택시, KTX에 붙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전세버스는 제외라서 공제 가능하다.



접대비의 처리는?

접대비는 특정인, 즉 거래처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거래처를 접대하는 데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차피 공제받지 못할 바에 그냥 영수증을 받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이 1만 원이 초과됨에도 영수증 같은 비적격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전액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거래처가 아닌 직원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복리후생비라고 한다. 똑같은 식사 비용이라 하더라도 거래처를 위한 비용은 접대비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고, 직원을 위한 회식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직원 워크숍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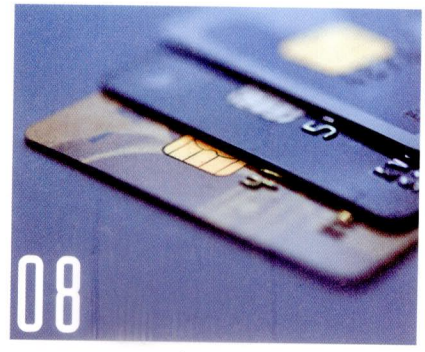
문구류에 대한 공제 여부

문구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할까? 문방구가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문방구 주인이 일반과세자라 할지라도 일반 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법인사업자라면 직원의 개인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공제가 된다.



각종 공과금도 꼼꼼히

사업장에서 지불해야 하는 공과금에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사장 휴대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등이 있다. 그런데 이 공과금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으로 명의 전환을 하지 않고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증으로 명의 전환을 하면 다음 달부터 공과금 고지서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공급가액, 세액이 명시된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된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명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지출한 공과금이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관련된 절세 포인트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www.taxsave.go.kr)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여부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여부와 업종을 판단해 공제 여부를 선택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되도록이면 국세청에 등록한 후 사용하는 것이 부가세를 절감하는 첫 번째 포인트다.

그런데 국세청이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률적인 프로그램에 의하므로 무조건 불공제 대상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점은 신고자 본인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접속해 부가세 신고 전에 공제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국세청 프로그램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직접 선택한다면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아낄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다.